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0421

발의연월일 : 2014. 4. 30.

발의자 : 김희정 · 강은희 · 박인숙 · 염동열 · 박윤옥 · 박성호
주호영 · 박창식 · 김장실 · 조해진 · 신학용 · 하태경
서용교 · 이한성 · 이만우 · 김종태 · 이완영 · 정의화
이자스민 · 이에리사 의원(20인)

제안이유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그

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학의 장은 대학의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학의 장은 대학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사.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조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 자.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

-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
-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와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3. ‘대학 평가’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가. 발전계획
 - 나. 교육여건
 - 다. 교육과정 및 운영
 - 라. 대학 및 학교법인의 운영
 - 마. 대학의 특성화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학 구조개혁’이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생정원 감축·조정,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대학 폐쇄·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및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학 평가 및 대학평가위원회

제1절 대학 평가

제4조(자체 평가)

- ① 대학의 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 평가)

-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대학 평가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대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 평가의 기본원칙)

- ① 대학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② 대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대학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 ① 대학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 평가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평가위원회

제10조(대학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대학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법원조직법」 제4조·제5조에 따른 대법관·판사는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학교법인이나 대학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학교법인 또는 대학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장 대학 구조개혁 등

제1절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제15조(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조정
 2.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3.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4.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5. 학교법인의 해산
 6. 대학 경영의 효율화
- ②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대학 구조개혁 명령 및 제재조치)

-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조정
 2.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3.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교직원 또는 임직원이 제5조에 따른 대학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 및 신입생 모집정지
 2.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 또는 조치
 3. 제17조제2항의 대학 폐쇄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학을 폐쇄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제18조(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설치)

- ①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 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구조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2.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명령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구조개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및 학교법인 등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구조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를 대표하는 사람
 - 2.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법조계·경제계·산업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구조개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구조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결격사유)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장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특례

제1절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특례 등

제23조(해산 및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례)

- ①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자체해산계획서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출연
 -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 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 이 경우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지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로의 귀속
- ④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해산인가신청서(자체해산계획서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잔여재산처분의 한도)

-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 2.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학기인건비 부담액

3.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4.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이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의 지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폐지되는 대학에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

② 교육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환원 금액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관한 특례)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학생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 ① 학교법인이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토지에 대해 학교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27조·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학 폐지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 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지한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운영한다.
- ②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에 용도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8조(국가의 임무)

- ① 국가는 구조개혁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등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권고,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제29조(교직원의 면직 등)

- ① 대학의 교직원이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및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대학 폐쇄·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는 경우 교직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정년에 이른 사람은 제외한다.
- ③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적생의 보호)

- ①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 폐쇄·폐지,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을 받은 대학의 장은 편입학하는 학생이 해당 대학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대학이 폐쇄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직증명서 등 기록의 보관 및 관리와 그 증명의 발급 등을 다른 대학의 장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 개선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 업무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9조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 ①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은 경우
- ② 제32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구조개선’을 ‘구조개혁’으로 한다.

제4조(종전 정원감축 인정에 관한 특례)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학생정원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관련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인정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이 예상됨(안 제5조제3항).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점에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이 예상됨(안 제10조제1항).

입법동향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점에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이 예상됨 (안 제18조제1항).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임의적 규정으로 두었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동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는 위원회의 구성에 구체적 사항이 정하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김희정 의원실 지옥현 비서관(788-2181)